2019년 청년(19세이상 39세이하)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청년[19세이상 39세이하]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 취업여부, 대학교 재학여부 등 관계없음)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1. 사업대상지역 : 전라북도

2. 공급물량 : 200호

3. 신청방법

【임대주택 인터넷청약 신청방법】

본 청년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신청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http://apply.lh.or.kr)→청약신청(주거복지)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4.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2019.06.28)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이고 공급신청지역 이외의 타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해당 시(광역시 포함)·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 지역 출신으로서 아래 순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4순위자의 경우 타시·군 출신 적용 제외하며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타 시, 군 출신 인정기준**

○ 공고일 현재 해당 가구가 **공급신청지역 이외의 시(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포함)·군**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 해당 가구는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하나에 의함

▷ **신청자의 부모(세대 분리된 부모 모두 포함하되, 이혼 시 부 또는 모에 한함)**

▷ **기혼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

※ 단, 동일한 시·군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도 도서지역(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은 지원 가능

※ 신청자가 혼인 후 이혼, 사별한 경우는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주민등록 말소 포함)는 타 시·군 출신 불문

※ 4순위 신청자의 경우 타 시·군 출신 불문

5. 신청순위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가구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가구의 청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2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한다)의 비율이 30%이상인 가구의 청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가구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가구의 청년 * 다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총자산 19,6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퇴소한지 5년 이내의 청년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50%이하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청년 * 다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총자산 19,6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가구 중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청년 * 다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총자산 19,6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
3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청년 * 다만, 행복주택(대학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본인기준 총자산 7,500만원이하, 자동차는 소유하지 않을 것)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가구 중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청년 * 다만, 행복주택(대학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본인기준 총자산 7,500만원이하, 자동차는 소유하지 않을 것)
4순위	(신청자 본인)가구당 월평균소득 80%이하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80% 이하인 가구(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100%) * 다만, 행복주택(청년)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총자산 23,200만원이하, 자동차 2,499만원이하, 세대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 기준)

공통

▢ 소득기준 금액

(금액단위 : 원)

구분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50%	2,700,907	3,082,601	3,349,933	3,674,446	3,998,959	4,323,472
70%	3,781,270	4,315,641	4,689,906	5,144,224	5,598,542	6,052,860
80%	4,321,451	4,932,162	5,359,892	5,879,113	6,398,334	6,917,554
100%	5,401,814	6,165,202	6,699,865	7,348,891	7,997,917	8,646,943
150%	8,102,721	9,247,803	10,049,798	11,023,337	11,996,876	12,970,415

※ 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시 가구원수 산정에 태아 포함

▢ 순위별 소득, 자산, 가구원수 산정 기준

구분		소득	자산
1순위	수급자	제외	제외
	한부모	제외	제외
	RIR30%	세대 기준	제외
	장애인	세대 기준	세대 기준
2순위		본인 + 부모	세대 기준
3순위		본인 + 부모	본인
4순위		본인 (본인이 세대주이며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 기준)	본인 (본인이 세대주이며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 기준)

※ 세대기준은 신청자, 신청자의 부모(세대 분리된 부모 모두 포함하되, 이혼 시 부 또는 모에 한함), 신청자와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단, 기혼자의 경우 신청자, 배우자(신청자와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RIR : 월 소득 중에서 무주택자가 주거를 위해 쓰는 주택 임대료 부담 비중을 파악하기 위한 지수이며 "주택 임대료/월 소득"을 뜻함

6. 신청절차 및 일정

■ **신청절차**

입주신청 (LH 청약센터) → 자격확인 (LH 지역본부) → 개별통보 → 전세주택 물색 (입주자) →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 지역본부) → 입주

- **소득· 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신청기간 : '19.07.02(화) 10:00 ~ '19.08.30(금) 17:00**

※ 본 입주자모집은 신청순위와 관계없이 순위별 자격을 갖춘 대상자를 선착순 신청에 의해 모집하며, 신청호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 접수가 조기중단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 첨부파일의 용량, 형식이 제한되어 있으니, 신청 전에 첨부파일 용량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확인하기 바람.

(파일크기 최대 1,000KB 미만 /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 업로드 가능)

(단,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500KB 이내의 tif(tiff) 파일만 가능(파일 해상도 기본 300dpi(흑백))

■ **입주대상자 안내: (수급자등)신청일로부터 약 4주후, (소득, 자산 확인 필요시)신청일로부터 약 10주후**

※ 기금 등 자격검색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개별 안내

※ 신청자 중 자산, 소득 등에 대해 추가 소명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통보하고 **소명기한 부여**

■ **신청시 제출 서류 :** 신청서 접수 시 스캔하여 첨부

7. 첨부서류

■ **첨부서류(제출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 기재되도록 발급)**

첨부서류[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공통	**1. 주민등록등본(본인, 부모 등)** *** 주민번호 뒷자리 기재 발급**	- 등본상 부모 주소 분리시 **분리된 부모 등본 추가 첨부**(국내 주민등록 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재외국민은 해외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첨부) - **기혼자의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등본 추가 첨부(부모 등본 불필요)** - 소득확인 대상자 중 임신 중인 자가 있는 경우 병원에서 발행한 **임신확인서 추가 첨부**
	2.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주민번호 뒷자리 기재 발급**	-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 되지 않는 경우 말소자초본 등 추가 제출
	3.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 법정 양식으로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이 서명)의 서명, 날인 **※ 1순위자 중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2~4순위 신청자 작성제출 필요** **※ 유의사항 : 스캔 시 500KB 이내의 확장자 tif (tiff) 파일로 업로드**
	4.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 등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사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1순위자 중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2~4순위 신청자 작성제출 필요** **※ 유의사항 : 해당사항 없는 경우에도 해당여부에 '아니오' 기재하여 업로드**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될 수 있음(본인 및 세대구성원 자산 내역 모두 기재)**
	5.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명, 날인
해당자에 한함	**6.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가구**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가구**
	7. 한부모가족증명서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8. 장애인등록증명서	**- 장애인가구는 첨부**
	9. 퇴소증명서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퇴소한지 5년 이내인 경우
	10. 차상위계층 확인서류	- 차상위계층 확인서(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7호),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11.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초본(본인, 부모) *** 주민번호 뒷자리 기재 발급**	- 부모 **이혼** 시에 한해 상세유형으로 발급 및 첨부하며,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본인, 부모 모두) 과거주소 이동내역이 표시되어야 함**
	12. 혼인관계증명서(본인) *** 주민번호 뒷자리 기재 발급**	- 신청자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한 경우(상세 유형 발급)

8. 지원 대상 주택 및 규모

■ 전세금 지원한도액

전라북도 지역
85백만원/호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1호 1인 입주 시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로** 제한함

■ 지원가능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道)지역)에서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 시 반환함)**하여야함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함]

9. 임대조건

■ 임대조건

- 기본임대조건

순위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1·2순위	100만원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해당액
3·4순위	200만원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3% 해당액

- 보증금 지원 규모별 지원금리

순위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	6천만원 초과
1·2순위	연 1.0%	연 1.5%	연 2.0%
3·4순위	연 2.0%	연 2.5%	연 3.0%

※ 월 임대료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순위별 거주형태별 임대조건 예시

1순위자가 전세금 8,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2.0%(연) ÷ 12개월]
= [(8,000만원 - 100만원) × 2.0% ÷ 12] = **131,660원**

4순위자가 전세금 7,000만원, 월세 25만원의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 **임차료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임대보증금) 275만원(기본 200만원 + 3개월치 월세 해당액 75만원)
(월 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3.0%(연) ÷ 12개월]
= [(7,000만원 - 275만원) × 3.0% ÷ 12] = **168,120원**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3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임차료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금) 500만원(기본 200만원 + 12개월치 월세 해당액 300만원)
(월 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3.0%(연) ÷ 12개월]
= [(7,000만원 - 500만원) × 3.0% ÷ 12] = **162,500원**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12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10. 임대기간

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은 2년 단위로 총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입주 후 혼인한 입주자의 경우 전술한 2회 재계약 이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총자산 2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2년 단위로 7회 연장할 수 있음

나. 재계약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음

11. 입주자격 확인방법

가. 입주대상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 예정으로 LH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검색 결과대로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임

- 신청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반드시 동의하여야 함**

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자격 확인

- 입주자격 :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기준 충족여부(총자산·자동차 검색 포함), 장애인가구 여부(시설퇴소자의 경우 시스템을 이용한 자격 확인 불가로 별도 서류 제출 필요)
- 소명대상 안내 SMS 및 e-mail을 발송할 예정이오니, **입주 신청시 본인의 연락처(핸드폰 번호)와 e-mail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 주시기 바람(신청인 전부 필수정보임)

12. 신청 부적격자

가. 청년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가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자인 경우** 대상주택 입주시까지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고 대상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함**

나. 공공임대주택 등을 기지원 받고 있는 가구의 세대원 중 대상주택으로 주민등록전입이 불가한 경우 청년 전세임대 지원 제외

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주 신청 관련 안내

ㅇ 금회 접수 시 중복 지원(신청접수)은 불가

ㅇ 인터넷 신청내용 및 첨부서류는 신청 당일 24:00까지 수정 가능하며 이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지역본부로 별도 문의

나. 주택물색 관련 안내

ㅇ 부모(부모가 세대분리된 경우 양쪽 모두) 또는 배우자(기혼자의 경우) 주소 소재지역(시, 군)을 제외하며, 신청지역(특별시, 광역시, 도지역)내에 한하여 물색 가능

ㅇ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가능**하며, 신청자(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 대상주택에서 제외됨

※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전에 해당 LH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가능 여부 확인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거주중인 주택도 지원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 계약체결 및 주택물색 안내 시 부채비율 산정방식 등 세부내용 재안내 예정

ㅇ 전세계약 체결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선지급함**(단, 계약 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될 경우 기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으니 반드시 LH 해당 지역본부 승인 후 계약)

ㅇ 입주대상자는 지원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의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으며, 주민등록 미전입 또는 무단이전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공무원 시험 준비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미전입 불가

ㅇ **병역 또는 장기 휴학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계약 전 주택소유자 및 LH 지역본부와 협의 후 전세계약 기간을 조정하여 계약체결하여야 함**. 계약도중 장기 거주 이전이 필요한 경우 입주자는 주택소유자에게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전 이주로 전세금 반환이 불가할 경우 발생하는 임대료 등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다. 건강보험 추가증 신청 제도 안내

ㅇ 19세 미만인자(대학원 석사 이하 재학생으로 19세 이상 미혼 자녀도 포함)가 학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보호자와 떨어져 학교와 통학 가능한 지역에 단독으로 별도세대구성 또는 다른 세대 전입된 자는 추가증 신청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기존처럼 합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 관련 문의 :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라. 기타

ㅇ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체납, 불법전대 등의 사유로 공사로부터 계약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추후 공사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청년이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 주택을 계속 공급
-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신청자와 배우자]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전까지 상환하여야 함
- 기타 세부내용은 청약센터에 게시된 `Q&A' 참조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준용
- 국토교통부 및 LH 지침 등 개정에 따라 임대조건은 달라질 수 있음
- 입주신청 내용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출 서류 등을 통해 확인 불가시 해당 서류를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입주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 자격은 신청일 부터 계약일 까지 유지하여야 함.
- 지원 신청자 본인만 거주가능이 원칙.

14. 문의처(월~금요일, 09:00~18:00)

지역본부	관할 지역	주소	연락처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1670-2596**

2019.06.28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

16.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1순위)건강보험공단 (2순위)국민연금공단 (3순위)장애인고용공단 (4순위)국세청 ※ 공적자료 우선원칙에 의해 위 자료의 순위에 따라 1가지만 조회됨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 자산항목 산정방법

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임 [**소득 및 자산액**은 **가구원의 합계액을 말함]**

구분		산정방법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산출한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해당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별도의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이때 자동차는「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구분		산정방법
총자산	일반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8.03.14.)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가구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자산검색 대상 가구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가구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함' 항목은 필수 동의 사항이며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은 선택사항이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 제공 동의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함